

문서번호	주거사업과-584	주무관	주거사업총괄팀장	주거사업과장	주택기획관	주택건축본부장
결재일자	2019. 1. 15.					
공개여부	대시민공개	협 조				
방침번호						

I·SEOUL·U

너와 나의 서울

# 정비사업 일몰기한 연장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변경

2019. 1.

**주택건축본부**  
(주거사업과)

## 사전 검토항목

☞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‘■’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 (※ 비고 :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)

구 분	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	검토 완료	해당 없음	비 고
정책의 제형성	<p>◆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? - 현황자료(통계자료 등)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</p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	<p>◆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? - (시민참여) 청책토론회, 시민공모, 설문조사 등 - (전문가 자문) 자문위원회, TF운영, 타당성 검토조사 등</p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정책수립	<p>◆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(근거법령 및 규칙, 지침 등)는 검토하였습니까? - (선거법)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- (성별분리통계)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</p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
	<p>◆ 정책(사업) 집행의 직·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? - (갈등)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- (사회적 약자)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- (일자리) 일자리 창출, 직·간접 채용, 전문인력 양성, 창업지원 - (안전)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, 안전 관리 등</p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정책집행	<p>◆ 타기관,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·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? - (타기관) 타기관(중앙정부, 지자체), 민간(단체) 등의 자원 활용 방안 - (자치구 영향)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, 파급효과 분석 등</p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	<p>◆ 정책·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? - (지속가능성) 지역경제 발전, 사회적 형평성, 환경보전 등</p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정책홍보	<p>◆ 국내외 정책(사업)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- (홍보) 국내보도자료, 기자설명회, 현장설명회 - (정책영문화) 영문제목·요약, 해외언론보도,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</p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기타사항	<p>◆ 불필요한 외국어·외래어 표현 대신 <b>바른 우리말</b>을 사용하였습니까?</p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
	<p>◆ 공개 여부를 “<b>비공개</b>”로 설정했다면 <b>법적근거</b>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? 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~제8호)</p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
# 정비사업 일몰기한 연장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변경

재정비촉진사업의 일몰기한 연장 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처리기준을 변경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고자 함

## □ 현황 및 추진경위

- **舊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**(’16. 3. 2. 시행)
  - 정비구역등 해제 시 **도시계획위원회 심의**를 거쳐 고시
- **정비사업 일몰기한 연장에 관한 업무처리기준**(주거사업과, ’16. 11. 21)
  - 일몰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도 **도시계획위원회 자문**을 거쳐 고시
- **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**(’18. 2. 8. , 법령 전부개정)
  - 정비구역등 해제 시 **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**를 거쳐 고시

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(’18. 2. 8 전부개정) 〉

### 제20조(정비구역등의 해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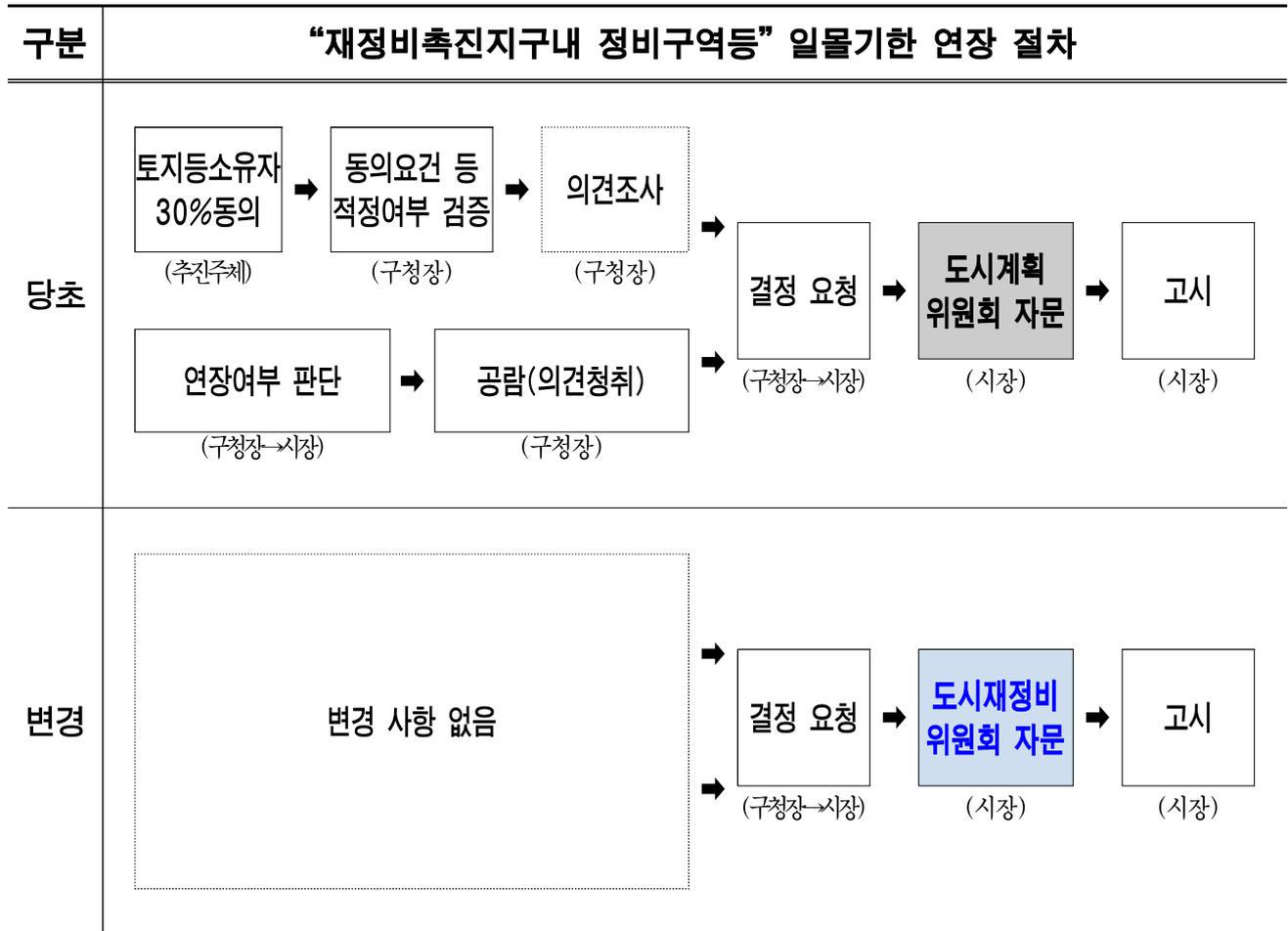
- 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받거나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다만,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**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**하여야 한다.
- (단서조항 추가)

## □ 문제점

- **일관성 있고 원활한 사업추진 곤란**
  - 재정비촉진지구내 정비구역등에 대하여 “해제”는 **도시재정비위원회**, “일몰기한 연장”은 **도시계획위원회**로 이원화되는 **문제점 발생**

## □ 조치(변경)계획

- 일몰기한 연장 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업무처리기준 변경



※ 기타 변경사항 없음

## □ 행정사항

- 즉시 시행 및 자치구 통보

붙임 1. 상정조서 양식 1부.

2. 위원회 안건상정 자료(PT) 양식 1부. 끝.